

창원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112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9. 10.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증여계약은 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증여계약은 3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9. 3. 25.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C 및 F이 연대보증(보증한도 375,000,000원)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G법무법인 2018년 증서 제430호)를 작성하였다.

나. 연대보증인 C은 2019.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99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2019. 2. 21.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2019. 2. 21.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72,500,000원)은 2019. 7.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9. 7. 10. 근저당권설정등기(2019. 7. 3.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13,400,000원)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15,000,000원(다툼 없음)이고,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400,000,000원인 점 역시 다툼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가압류 청구금액 또는 2019. 7. 3.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고려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의 경우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2019. 7. 3.자 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상회복 방법

① 보건대,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하고, 결국 시가인 400,000,000원에서 피담보채권액 3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에 대한 변제액 또는 해방공탁액 97,542,970원 역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별지